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- 1521호

‘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‘행정절차법’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7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훈령안 행정예고

1. 개정사유

분류 코드 신설에 따른 건설기준 소관부서 및 관련 단체를 현행화 하고 일몰 구분을 재설정함으로써 행정업무 연속성을 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안 제152조

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

나. [별표 13] 건설기준 종류별 소관부서 및 관련단체

- 대분류 코드 신설*에 따른 관리부서 지정 및 코드체계 순서 재배치 등

* 건설측량 설계기준(KDS 12 00 00), 소규모건축(KDS 42 00 00), 특수목적건축(KDS 43 00 00)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기술혁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
- 전자우편 : seju6757@korea.kr / 팩스(FAX) : 044-201-555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에서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(전화 044-201-3568, 356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